

인증기관 [] 지정
[] 지정갱신 신청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개월
신청인	기관 또는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설립목적			
설립연월일			
인증업무의 범위	무항생제 축산물 [] 생산자 [] 취급자		
	인증지역		

「축산법」 제42조의8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의17제2항·제47조의19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기관의 []지정, []지정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2. 규칙 제47조의16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인증기관 지정서(지정을 갱신하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수수료 규칙 제51조 및 별표 12에 따른 수수료
------	--	-----------------------------------

작성 방법

- 1. 문자는 검은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습니다(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외국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 2. 사업자등록번호란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3. 소재지란에는 기관의 주사무소 및 지방사무소 소재지의 도로명 주소를 적습니다.
- 4.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번역한 신청인의 기관명 및 대표자명을 적습니다.
- 5. 인증업무의 범위란에는 규칙 제47조의15의 인증업무의 범위 중 수행하려는 업무범위를 업무와 지역으로 각각 표시합니다.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